

산학협력 운영 규정

- | | |
|--|-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제정 : 1995. 9. 1.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17. 2. 28.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1997. 4. 1.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17. 8. 31.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1998. 11. 1.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18. 3. 1.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1999. 10. 1.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18. 8. 31.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00. 3. 1.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19. 11. 29.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05. 3. 1.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20. 3. 13.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09. 1. 30.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20. 12. 31.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12. 6. 29.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23. 6. 1.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16. 3. 9.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: 2025. 4. 1. |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산학협력팀 산학협력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반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: 2023.6.1.>

제2조(업무) <삭제 : 2020.3.13.>

제 2 장 조 직

제2조(조직 및 업무) 산학협력처에 산학협력팀을 두며,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: 2023.6.1.>

1. 가족회사 관련 업무
2. 산업체 인사 초청 특강 관련 업무
3. 산학협력 협약
4. 산학협력 관련 사업 업무
5. 사회맞춤 및 산학맞춤 교육
6. 현장견학 관련 업무
7. 산업체 재직자교육 관련 업무 <개정 : 2025.4.1.>
8. 기타 산학협력활동에 관한 업무

제 3 장 산학협력위원회

제3조(위원회 명칭) 본교 시행세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산학협력에 관한 제반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함)를 둔다. <개정 : 2020.3.13.>

제4조(구성) 본 위원회의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. 단, 산학협력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제5조(임기) 본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보직기간, 위촉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) 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처장이 되며, 간사를 1인 둔다.

②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,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.

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7조(업무) 본 위원회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.<개정 : 2020.3.13.>

1.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
2.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
3.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

제8조(회의소집)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소집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은 이전에 시행하던 수원전문대학 실험·실습실 운영규정('91. 9. 1시행), 실험·실습기자재 폐기규정('91. 9. 1시행), 실습관리위원회 규정(제정 '85. 4.1 개정 '91. 5. 20)은 폐기하고, 본 실험·실습 운영규정에 적용하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규정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은 이전에 시행하던 산학협동위원회 운영규정('94. 4. 1 시행)은 폐기하고 본 산학협력 운영규정 제4장 산학협동협의회에 적용하되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6-2-1 산학협력 운영규정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